제규정 기본 규정

제정 1993. 10. 18.
2차 개정 2013. 07. 0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지대학교에서 시행되는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제규정이라 함은 법령 및 정관과 학칙에 준거하여 학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적인 효력을 가지는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제반문서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학칙 시행세칙"이라 함은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규정"이라 함은 정관과 학칙에 준거하여 학교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하여 그 기본적인 방침 및 기준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요강"이라 함은 학교의 사무처리에 있어서 통일을 요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⑤ 이 규정에서 "내규"라 함은 외부에 공시함이 없이 학교의 사무처리의 부분적인 기준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⑥ 이 규정에서 **"준칙 또는 지침"**이라 함은 시행세칙이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준을 정한 체계적인 규범형식의 제반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7.5)

제2장 제규정의 형식

제3조(종류) ① 제규정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6종으로 구분한다.
1. 학 칙
2. 학칙 시행세칙
3. 규 정
4. 요 강
5. 내 규
6. **준칙 또는 지침** (개정 2013.7.5)

② 제규정의 서열은 제1항의 배열 순위에 따르며 상위의 제규정은 그 하위에 있는 제규정에 우선한다. 하위 제규정으로 상위 제규정에 정한 규범에 반하는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형식과 내용) ① 제규정에는 다음의 요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1. 총칙: 규정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기타 총괄적인 사항
2. 본칙: 당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지침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부칙: 시행일자, 경과조치, 기존규정과의 관계등 명시

② 제규정에는 다음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1. 조문은 법령식으로 간명하여야 한다.
2. 장, 절, 조, 항, 호 및 목의 순서로 필요에 따라 설치하되, 장절조에는 그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
3. 사용문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자 기타 외국문자를 혼용할 수 있다.
4. 보기, 별표 및 서식은 부칙 다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조문의 내용을 세분화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가. 항의 표시: ①, ②, ③, ----- .
   나. 호의 표시: 1, 2 3, ----- .
   다. 목의 표시: 가, 나, 다, ---- .

6.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부칙은 5개항 이하인 경우에는 항으로, 초과인 경우에는 조로 한다. 다만, 1개항일 경우에는 항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조 개정 2001.8.16)

제3장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

제5조(제규정의 입안) ① 제규정의 입안은 업무소관 부서에서 주관하며, **규정입안서(별지서식 제1호)**를 첨부하여,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기획처에서 입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업무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5)

② 규정입안부서에서는 제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입안하여야 한다.

③ 제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처는 업무소관부서에 제규정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요강, 내규 및 준칙 또는 지침은 기획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업무소관부서에서 처리하되, 공포·시행과 함께 기획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13.7.5)

(조 개정 2001.8.16)

제6조(입안규정의 처리) 기획처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교무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1. 제정 또는 개폐의 필요성
2. 용어의 적부
3. 타 규정과의 관련성 여부
4.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5. 제규정 항목의 조정 및 추가, 삭제
6. 제4조, 제5조의 요건 구비여부

(조 신설 2001.8.16)

제7조(제규정의 제정) ① 제규정의 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써 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규정은 정관에 의한다.

② 요강, 내규 및 **준칙 또는 지침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13.7.5)

(조 개정 2001.8.16)

제8조(제규정의 개폐절차) ① 제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절차는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3.7.5)

②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일은 그 차례대로 규정류 상단 우측에 계속적으로 표시한다.

③ 규정중 일부를 신설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그 조항의 말미에 일자를 표시한다.

(조 개정 2001.8.16)

제4장 제규정의 관리

제9조(제규정의 관리) ① 제규정은 기획처에 그 원본을 보존하며, 기획처는 제규정 제정, 개정 및 폐기사항을 제규정대장(별지서식제2호)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② 기획처는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기 사항을 각 부서에 공지하며, 교내 홈페이지에 제규정 전문을 공고한다. **단, 제5조의 ④에 의하여 제·개정, 폐지된 제규정의 공고는 홈페이지의 인트라넷에서 관리한다**. (개정 2013.7.5)

③ 제규정의 편집·발간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항 신설 2013.7.5)

(조 개정 2001.8.16)

제10조(제규정의 정리 및 비치) (삭제 2013. 07. 05)

제5장 보칙

제11조(법령등의 우선) 법령, 정관 및 학칙에 위반하는 제규정의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유권해석) 제규정의 해석은 기획처에서 주관하되 소관부서와의 합의를 거친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따라 제정 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정은 2001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기획예산부-392, 2013.7.5)

이 규정은 2013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개정 2013.7.5)

규 정 입 안 서

1. 입안규정

규 정 명		규정번호	- -
구 분	(제정 · 개정 · 폐지)	입안부서	
입안사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		
주요내용			

2. 참고 사항

관계법령		관련 상위·하위 제규정	
예산조치	(기획예산부와 필히 협의)		
관련부서와의 협의			

3. 신 ·구 조문 대조표

규정명		구 분 : (제정·개정·폐지)
		입안부서 :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작성방법

1. 비고란에는 개정조문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명시한다.
2. 어느 조문이 변경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현행" 및 "개정안"의 조문에 밑줄로 표시한다.
3. 개정이 필요한 조 중 일부 항만을 개정할 경우 개정하지 않는 항은 항 일련번호만 표기하고 생략 할 수 있다.
4. 신설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현행"에 〈신설〉로 표시하고, "개정안"에 신설조항의 전체 내용을 밑줄로 표시하며, 삭제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현행"에 삭제되는 조항의 전체 내용을 밑줄로 표시하고 "개정안"에 〈삭제〉로 표시한다.
5. 신설 및 폐지된 조항은 진한 글씨체로 표시한다. 또한 단순한 용어의 표현을 바꾸는 것이 아닌 주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조문을 진한 글씨체로 표시한다.

붙임 : 제규정 제·개정(안) 1부. 끝.

20 . . .

발 의 부 서 장

기획처장 귀중

〔별지서식 제2호〕

제 규 정 대 장

연번	규정번호	개정 횟수	제규정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공고일	비 고